

	<h2 style="margin: 0;">계약학과 운영 규정</h2>	규정 번호	2-4-25
		제정 일자	2018.11.02.
		개정 일자	2021.06.11
		책임부서/팀·계	P-TECH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칙 제63조의 2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재교육형의 일학습병행학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라 함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도제학교)훈련 수료자 및 현장실습선도기업에 재직중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융합형·최신기술 중심의 기술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자격)과 대학 졸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과를 말한다.
 - 나. “대학 연계형 일학습병행”이라 함은 산업체 재직 1년 미만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자격)과 함께 대학 졸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과를 말한다.
- ② 이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사업주 단체”라 한다).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② 계약학과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설치권역 및 계약의 체결)

-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본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대학과 동일한 ‘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 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의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③ 계약학과의 설치에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④ 계약학과는 본 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권역제한 및 재직요건완화 등의 승인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 ① 계약학과와 설치·운영기간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② 계약학과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가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2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경비 및 부담)

- ① 계약학과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에 의해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공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② “채용조건형”인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③ “재교육형”인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졸업유보생의 경우 설치운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모체학과와 등록금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며, 모체학과에서 미취득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제3장 학생선발

제8조(입학자격)

-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 대학의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또는 재직예정자로 한다.
- ③ 매학기 재직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계약학과 학생의 선발은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제10조(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등)

-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와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② 수업은 출석수업(Off-JT), 현장실습수업(OJT)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에 한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이내에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 인정원을 제출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 1 (성적평가 방법)

계약학과의 학업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2021.06.11. 개정>

제12조(학사관리)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학)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는 사업기간과 교육훈련과정이 정해진 관계로 참여 학생의 휴학(병역복무에 의한 휴학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4조(제적) 본 대학 학칙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및 계약당사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재교육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본 대학 교직원, 계약에 참여한 산업체 인사 및 학생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업체 인사 및 학생의 구성비가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2.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산업체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2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